

◎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1-78호

전파법 위반(검사불응)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4일

부산 전 파 관 리 소 장

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

시설자명	주 소	허가번호	호출명칭	위반내용	처분내용
(주)모비딕 해운	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	42-1991-30-0000132	331한양호	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(2차위반)	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(2021. 11. 11. ~ 2022. 1. 10.)
임*훈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구복길	42-2019-20-0000230	300대흥호		
천*정	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	42-2019-20-0000221	300재창호		
김*수	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22번길	42-2019-20-0000268	303득명호		
김*식	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	42-2018-20-0001486	300주강호		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
3. 처분일자: 2021. 11. 11.

4. 참고사항

가.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,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나.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1-974-5192, 팩스051-974-518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